

# 양 천 구

## 주 의 요 구

**제 목** 공사의 하자검사 미이행 및 하자검사조서 미작성

**관 련 기 관** 서울특별시 양천구 〰〰〰〰과

**내 용**

### 1. 업무개요

〰〰〰〰과는 「사회복지사업법」, 「지방계약법」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관련 시설 공사 계약 및 공사 보조금을 교부 업무를 하고 있다.

### 2. 관계 규정 및 판단 기준

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제20조에 따르면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여야 하며, 계약담당자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요구하거나 보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.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에는 하자를 검사하는 자는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다만,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계약의 경우에는 하자검사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.

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 및 「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」에 따르면 하자검사를 하는 자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하여야 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최종검사를 해야 하며 최종검사와 정기검사 기간이 중복될 경우 최종검사로 갈

음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.

이에 재무과에서는 반기별 1회씩 하자검사 대상 시설물 목록을 첨부하여 하자검사 이행준수 및 하자검사 실시에 대한 공문을 송부하고 있다.

### 3.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

■■■■■■■■과에서는 관련 시설에 대한 공사 계약 및 관리감독 업무를 하면서 공사 준공 후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하자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.

### 4.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 의견

■■■■■■■■과 에서는 위 사항과 관련하여 별도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.

### 5. 조치할 사항

■■■■■■■■과장은

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, 동일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 등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. (주의)